

의안번호	2209392
의 퇴 인	최보운의원
회 답 일	2025.3.31.
추 계 번호	25B129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8조의13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구매 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 및 다자녀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다자녀가구를 말한다) 등을 대상으로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8조의13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구매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면서 재정 지원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재정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 제58조제3항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구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지원하고, 청년²⁾이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³⁾을 추가지원 하도록 규정함
 - －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 지침에서 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과 함께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함
- 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의 전기차 구매에 따른 국가 보조금 지급액은 24억 5,700만원임

[표 1]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수급 현황

(단위: 대,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수	국비	대수	국비	대수	국비	대수	국비
전기차	90,499	970,502	151,933	1,356,887	139,616	1,309,108	133,010	971,443
다자녀 가구	687	6,860	732	5,262	521	3,061	7,085	34,738
차상위 이하 계층	11	92	109	1,534	88	1,222	99	735
장애인	618	6,437	959	6,665	588	3,593	611	2,457

주: 다자녀 가구 및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의 전기차 구매에 따른 국비 소요액은 추가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장애인의 경우 추가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의 규모만을 의미함

자료: 환경부

1)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함

3)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의미하며, 2자녀 가구 100만원, 3자녀 가구 200만원, 4자녀 이상 가구 300만원을 추가 지원함(중·대형, 소형 전기 승용차 기준)

- 안 제58조의13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는 장애인의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고, 개정안에서 재정 지원의 대상, 지원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추계가 어려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